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구 미 시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 3.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노후 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선을 지중화하여 문화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전선 지중화사업에 필수적인 전기 지상개폐기, 변압기 설치 장소 마련을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

##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 위 치 : 구미시 문화로(2번도로)
- 대 상 : 토지 687m<sup>2</sup>, 건물 2동(건축면적:309.17m<sup>2</sup>)
- 사업비 : 8,193백만원(국비1,100, 시비4,662, 한전통신2,431)
  - ※ 사업비 산출내역 : 공사비 5,501백만원  
토지·건물매입비 별도 2,692백만원
- 기준가격 : 1,998백만원(토지 : 공시지가 / 건물 : 개별주택가격)
- 사업기간 : 2025 ~ 2026년
- 주요시설 : 전선지중화 L=567m(원평동964-63번지~원평동 126-1번지일원)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공모 선정(2025년 그린뉴딜 공모사업) : 2024. 11.
  -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의결 : 2025. 2 ~ 3.
  - 지중화 및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반영 : 2025. 1회 추경
  -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 2025. 5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6. 1 ~ 12.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5건	966.17	1,998	
	1. 매입	토지	3	687	1,685
		건물	2	309.17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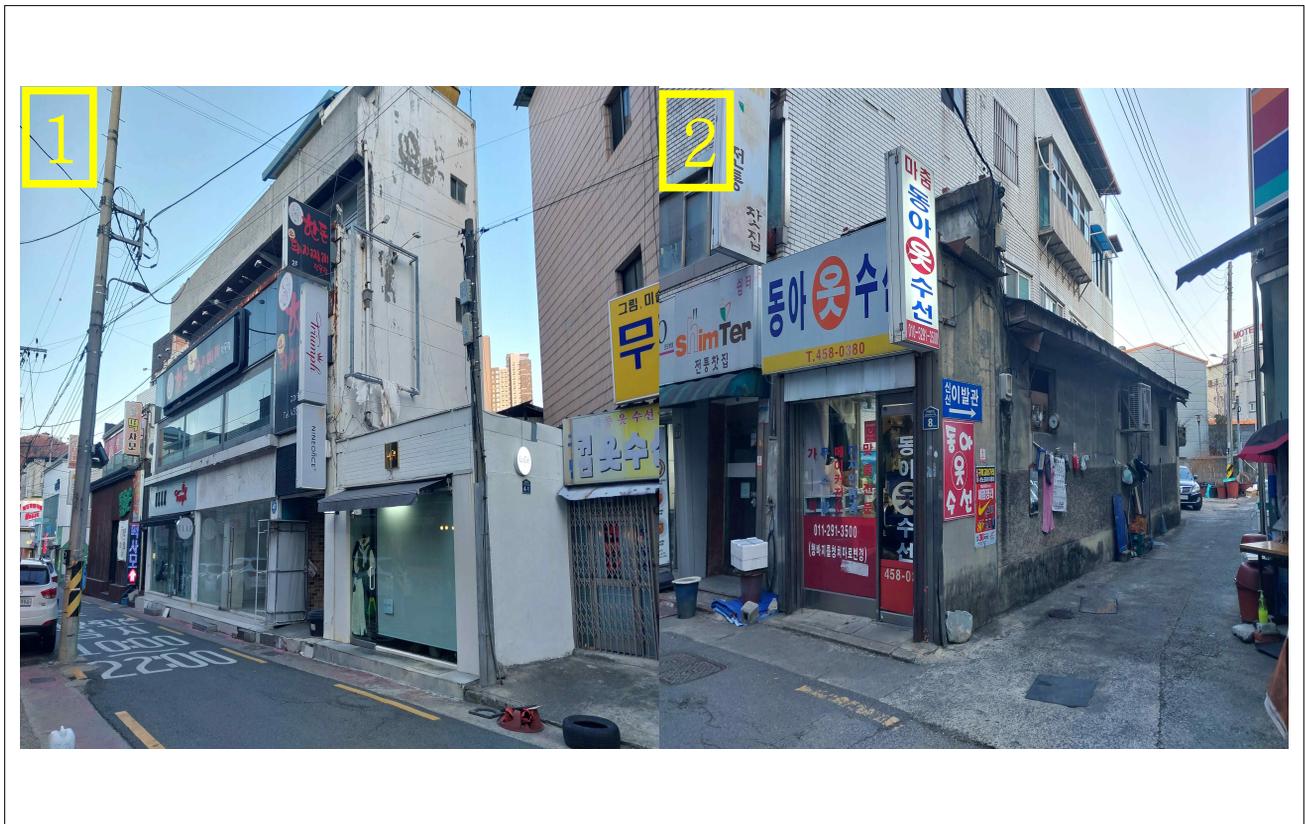
## 취득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m <sup>2</sup> )					
총계			996.17	1,998				
소계			687	1,685				
취득	토지	원평동 378-2	234	896	2025년	전기 지상기기 설치 장소		매입
취득	토지	원평동 381-2	268	260	2025년	전기 지상기기 설치 장소		매입
취득	토지	원평동 370-13	185	529	2025년	전기 지상기기 설치 장소		매입
소계			309.17	313				
취득	건물	원평동 378-2	183.61	184	2025년	전기 지상기기 설치 장소		매입
취득	건물	원평동 370-13	125.56	129	2025년	전기 지상기기 설치 장소		매입

# 위치도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비용추계서 (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전기 개폐기, 변압기 설치를 위한 사유지 토지·건물 매입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감정평가 진행 후 최종 가격기준을 산정하여 2025년 내 진행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토지매입	2,392	-	-	-	-	2,392
	○ 건물매입	300	-	-	-	-	300
	계	<b>2,692</b>	-	-	-	-	<b>2,692</b>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	-	-	-
시비		2,692	-	-	-	-	2,692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b>2,692</b>	-	-	-	-	<b>2,692</b>

###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감정평가 등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 도로철도과 도로정비팀 이성훈(☎480-5483)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감정평가비용	토지·건물매입	기타경비	소계
비용	-	2,692	-	<b>2,692</b>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 11. 생략
- ② 생략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 ④ 생략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

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 관 부 서		회 계 과 (도로철도과)
입 안 자	과 장	임 응 건 (강 신 해)
	팀 장	정 세 황 (정 상 화)
	담 당 자	정 민 주 (480-5072) (이 성 훈) (480-5483)